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수행과제명 :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Tel : 02-3156-7187, e-mail : kh99kim@kwdimail,re,kr

요 약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지난 5년간 수행되면서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성과관리와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성과파악과 함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1. 정책의 필요성

성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음.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실정임. 일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의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였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의 측면

▶ 법체계의 개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지난 5년간 이루어낸 성별영향평가의 양적 성장에 이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 법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대상, 평가대상 정책 및 추진주체, 추진절차,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에 관한 세부규정이 포함되어야할 것임.

▶ 추진체계의 개선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성 별영향평가 담당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어야 함. 지자체 사업의 대 부분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중앙기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다면 중앙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성차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부 처간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의 성별영 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신설되어야 함.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 지예산을 연계시켜 성주류화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 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중앙기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지자체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려면 중앙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크고 일반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어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무엇보다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담당기구를 신설해서 기관별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인원을 점검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예산·홍보 등 지원 확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예산 증가가 거의 없음. 성별영향평가센터가 16개 시도별로 적어도 1개 이상 운영되면서 성별영향평가 관련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예산을 보다 확충하고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

▶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과제선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기관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제선정위원회(여성정책관련 위원회 등)를 제시해야 할 것임.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포함시켜 과제선정이 기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제선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양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이 매뉴얼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담당공무원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분야의 특성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평가 위주로 분석되어야 함. 반면에 복지분야, 교육분야에서 선정된 대상과제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매뉴얼은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 등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이 제출한 환류실적 보고서에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가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실제로 환류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정책환류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류로 이 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음. 또한 현재의 환류실적 보고서는 제도개선의 진행정도와 추진기구,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향후 성별영향 평가 과제선정평가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점검하는지 여부, 환 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는지 여부,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환류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성과관리의 측면

▶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중앙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시키고 이 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성별영향평가 담당기구가 성인지 감사(gender audit)를 수행해야 할 것임. 앞서 설명한 대로 성인지 감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별도의 기구신설이어렵다면 여성정책조정회의(가칭)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와 제도운영의 전반을 성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환류 모니터링 : 거버넌스 실천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 주류화 시행과정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성주류화 실행네트워크(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 RGPN)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 네트워크는 지역 연구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이 주체가 되어 젠더 전문가, 여성부서 공무원, 의원, NGO활동가, 언론 등 성 주류화 실행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임.

3. 정책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홍보, 확대하는 것임.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주체를 검토하고 실행주체간의 협력체계, 정책환류를 위한 시스템을 마 련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셋째, 제도 개선 및 정책환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을 제시하는 것임. 넷째, 성주류화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실행주체간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제시하여 성주류화 관련제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는 것임. 다섯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 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임.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